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정재관
KEA특허지원센터장

국내 수출기업 및 해외 현지기업 상당수가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모른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해외 시장 공략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함은 곧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 과제라 하겠다.

1. 서론

해외 후발업체에 의한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특허분쟁은 해외 업체의 우리나라에 대한 침해주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해외 후발업체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그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실정으로, 그 하나의 예로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중 10~12%(650만여대)는 불법 복제품이라고 관련 업체는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산 제품을 불법 복제한 중국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 유통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우루무치 지역에서 가짜 LG 상표를 붙인 138만위안(1억7000여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적발했다.”

이와 같이 요즈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침해로 인한 피해의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특허분쟁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 주된 방향은 해외 선진기업의 피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피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피침해 현황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한 소위 ‘짜퐁’ 상품들이 중국 내 시장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수출된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000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국가	건수(%)
중국	62건(28.6)
중화권(대만·홍콩·마카오)	12건(5.5)
아시아권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국가)	39건(18.0)
유럽권	37건(17.1)
북미·오세아니아권	25건(11.5)
아프리카권	22건(10.0)
중남미권	7건(3.2)
기타	13건(6.0)
총계	217건

자료: “중국기업 한국산 베끼기 급증…제3국 수출로 피해 눈덩이”, 키키뉴스, 2007. 1.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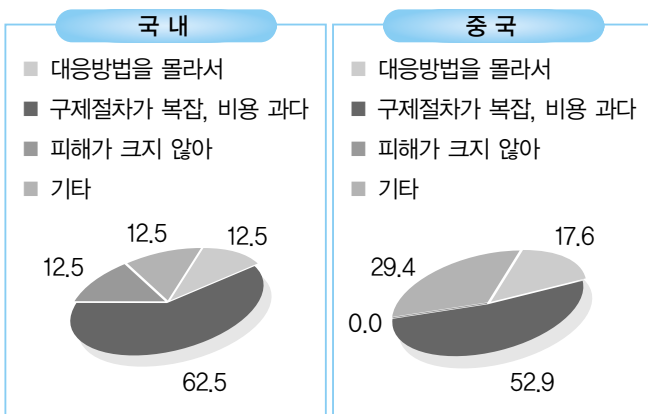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아시아권에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국가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짝퉁' 상품들이 침해가 발생한 국가 내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닌, 선진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보호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특허분쟁 증가에 따라,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수준이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 및 기업의 인식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즉, 특허청이 실시한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 우리기업 대부분이 지재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미흡 사유〉



자료: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특허청, 2006. 9. 참조.

또한 국내 수출기업 및 해외 현지기업 상당수가 현지에서

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모른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 및 해외 현지기업 상당수가 지재권 침해가 발생 시 대처방법의 부지 및 구제 절차의 복잡함을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지재권에 대한 침해발생 시 그 대처방법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구제 수단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으로 구성하여, 기업이 현지에 마련되어 있는 구제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해외 후발업체에 의한 침해는 그 침해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어 결국에는 기업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의 노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침해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해외 시장 공략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함은 곧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 과제라 하겠다.